- 목적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지표이다.	
	▶ 고려 요소 범위	▶ 핵심요소
- 고려 요소	지수질오염도 - 점오염원(點汚染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시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기타수질오염원: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 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곳 - 수질 및 수생태계(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환경기준) 2.상수도보급률 - 일반수도: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 광역상수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제 43조제4항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 지방사수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마을상수도 기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 - 공업용수도: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 3.하수처리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를 처리하여 하찬・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강우(降雨)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찬・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 한수자류시설: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찬・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의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 -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참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참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1.수질오염도 - 수질오염 총량제의 실시 - LID(저개발영향기법의 적용 - Line Garden의 조성 - 배수체계도의 작성 2.상수도보급률 - 중수 및 우수의 활용 - 지하수의 활용 - 시하수의 활용 - 시하수원 수량 확보율 - 가뭄대비책 작성 여부 3.하수처리율 - 하수처리원 -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량 - 기구별 하수 배출량